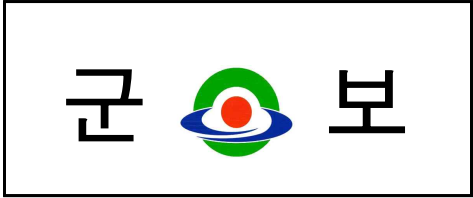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35호 2025. 7. 28.(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09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예 천 군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군세 감면 대상에 “자연유산”을 추가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감면 대상 중 “자연유산” 항목 추가(안 제4조)

나. 일몰기한 도래한 조항 일몰기한 연장(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cge014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 054-650-68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 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 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경상 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조례」----- ----- ----- 2 028년 12월 31일----- ----- ----- -----202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 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 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 한 감면)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8년 12월 31일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illegible]